

의안번호	2212462
의 퇴 인	윤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13.
추 계 번호	25F47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과 저율 과세구간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저율 과세구간을 확대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,973억원, 2029년 3,115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9,131억원(연평균 3,04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저율 과세구간 확대 (안 제72조)	-2,973	-3,043	-3,115	-9,131	-3,04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 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구간을 조정 (현행) 20억원 이하 9%, 20억원 초과분 12% → (개정안) 30억원 이하 9%, 30억원 초과분 12%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계
 -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,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저율 과세구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4년 이전 감면실적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를 반영해 조정한 후 활용
 -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저율 과세구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, 2024년 과세표준 구간별 조합법인 분포 및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
 - 산출된 값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과세특례 전반의 실적 증가추세가 저율 과세구간 확대시의 세수효과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 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2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일반법인		조합법인			
적용대상	일반법인	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업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			
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¹⁾) = 과세표준			
과표 구간별 세율			현행		개정안	
			20억원 이하	9%	20억원 이하	9%
					30억원 이하	9%
			20억원 초과	12%	30억원 초과	12%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%p씩 높은 세율 적용

- (특례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,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,11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,173억원 수준으로 감소
-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3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과세특례 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17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 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 및 저율 과표구간의 확대를 반영 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-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현행 과세특례		개정안 과세특례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억원)	세율 (%)	산출세액 (A',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억원)	
합 계	3,172	41,728	-	4,236	-	4,112	-	7,409	-3,173
2억원 이하	855	615	9	57	9	57	10	55	1
2~20억원	1,801	15,092		1,361		1,361		2,507	-1,147
20~30억원	181	4,392	12	420	9	397	20	798	-378
30~200억원	330	20,354	12	2,249	12	2,150		3,801	-1,552
200~3,000억원	5	1,276		150		149	22	247	-9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 실적을 조정
 -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5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3,172	41,728	-	-	-	7,826	-	-	7,409
2억원 이하	855	615	0.7	10	0.07	62	9	0.06	55
2~20억원	1,801	15,092	8.4	20	1.5	2,658	19	1.4	2,507
20~30억원	181	4,392	24.3		4.7	842		4.4	798
20~200억원	511	24,745	61.7		12.1	4,005		11.5	3,801
200~3,000억원	5	1,276	255.2	22	51.9	260	21	49.4	24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4년 기준 11.6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6]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4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B-A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D-A)	
산출세액	4,236	7,826	3,590	7,409	3,173	-11.6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평균 2.4% 증가함

[표 7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(‘20~’24)
특례 실적	조정 전(A)	3,271	3,347	4,230	5,113	3,173	-
	조정 후 (A×[1-11.6%])	2,891	2,958	3,738	4,519	3,173 ¹⁾	2.4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

- 한편, 개정안에 따라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2%에서 9%로 하향되면, 2024년 기준 세수가 124억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

[표 8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현행 과세특례		개정안 과세특례		저율구간확대 세수효과 (B-A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 억원)	세율 (%)	산출세액 (B, 억원)	
합 계	3,172	41,728	-	4,236	-	4,112	-124
2억원 이하	855	615	9	57	9	57	-
2~20억원	1,801	15,092		1,361		1,361	-
20~30억원	181	4,392	12	420	9	397	-23
30~200억원	330	20,354	12	2,249	12	2,150	-99
200~3,000억원	5	1,276		150		149	-2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과세특례 실적을 기준으로 저율 과세구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고,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2.4%)을 적용하여 추계

[표 9] 기한연장 및 저율구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세수효과	-2,973	-3,043	-3,115
기한연장	-2,861	-2,929	-2,998
저율 과세구간 확대	-112	-114	-117

(3) 추계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저율 과세구간을 확대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,973억원, 2029년 3,115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9,131억원(연평균 3,04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저율 과세구간 확대 (안 제72조)	-2,973	-3,043	-3,115	-9,131	-3,044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